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 국방위원회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전역예정자 전직 지원 범위 확대 등〉

■ 정진욱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5810호)

2026. 3.

국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송수환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정진욱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12. 31.
3. 회부연월일 : 2026. 1. 2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는 창업 역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, 창업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의2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‘취업’에서 ‘취업 및 창업’으로 확대하고,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 및 창업 등에 관한 정보요청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의2).

1) 전직지원 범위 확대 (취업→취업 및 창업)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46조의2(전직지원교육) 군인으로 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<u>취업</u> 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(轉職支援教育)을 할 수 있다.	제46조의2(전직지원교육 등) ① --- ----- --- <u>취업 및 창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- 국방부는 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의 취업을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내교육 또는 위탁교육 형태로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음¹⁾.

1)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60조의2(전직지원교육 대상 등)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(轉職支援教育)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,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□ 개정안은 창업 지원제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창업 지원 역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자는 것이나, 해당 법률안 발의 이후 본 법 개정²⁾을 통해 해당 내용으로의 개정이 이미 이루어짐에 따라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임.

법률 제21319호<2026.2.3. 개정>	정진욱의원안
제46조의2 (전직지원교육) 군인으로 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<u>취업</u> 및 <u>창업</u> 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(轉職支援教育) 을 할 수 있다.	제46조의2 (전직지원교육) 법률 제 21319호와 같음 (추가 개정내용 없음)

③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·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⑤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,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.

2)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 2210340호)

제안일자: 2025.5.2. / 국방위원회 상정일자: 2025.9.2.

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11.25. (대안반영폐기,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(대안)(의안번호 제 2215114호))

국방위원회 의결일자: 2025.11.27. /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12.10.

본회의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.1.15.

개정일: 2026.2.3. / 시행일: 2026.8.4.

2) 전직지원교육 정보 요청 근거 마련

현행	개정안
<신설>	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 및 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☐ 현행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는 수혜자의 전직성공수기 현상공모 등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어, 그 성과평가와 사후지원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.

☐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수혜자의 고용 및 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근로정보를 바탕으로 성과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.

☐ 다만, 해당 법률안 발의 이후 본 법 개정³⁾을 통해 해당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의 개정이 이미 이루어짐에 따라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임.

3)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 2210340호)

제안일자: 2025.5.2. / 국방위원회 상정일자: 2025.9.2.

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11.25. (대안반영폐기,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(대안)(의안번호 제 2215114호))

국방위원회 의결일자: 2025.11.27. /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12.10.

본회의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.1.15.

개정일: 2026.2.3. / 시행일: 2026.8.4.

법률 제21319호<2026.2.3. 개정>	정진욱의원안
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신 설>	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 및 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신 설>

□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법률로써 반영되어 그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, 추가적인 개정 논의의 실익은 적은 것으로 보임.

□ 국방부는 전직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교육 등과 연계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「군인사법」이 이미 개정('26.2.3.)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310